

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2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8월 14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는, 학교급식을 위해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축산물을 적정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,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치된 광역학교급식지원 센터로,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운영하고 있음
- 나. 「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3 제3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(이하 “농수산식품공사”라 한다)에 민간위탁(신규)으로 운영하고자 함
- 다.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(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(조직담당관)) 결과, ‘적정’으로 결정되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기관 :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
- 나. 위탁내용 :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3 제2항 전체(관계 법령 참조)

다. 위탁기간 : 위탁일로부터 3년(2018. 1. 1.~2020.12.31.)

라. 위탁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3 제3항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‘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’
-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(2014, 교육부)

마. 위탁의 필요성

- 친환경유통센터는 농수산물공사에서 2010년부터 운영해 온 것으로,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사항(제8조의3 제3항)을 이행하려는 것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**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** 제8조의3(친환경유통센터)
 - ① 시장은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를 설치·운영한다
 - ② 친환경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1. 학교급식 농수축산물 공급 및 배송체계 구축
 2. 식재료 공급·배송업체 선정, 평가 및 관리
 3. 공급·배송업체별 학교 배정 및 조정, 공급권역 배분 등의 관리
 4.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 및 관리
 5. 납품 농·수·축산물 품질 및 안전성 관리
 6. 우수 농·수·축산물 산지 개발 및 관리
 7. 부적합 급식재료 출하자 및 유통업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
 8.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
 9. 학교급식 고객 만족도 조사 및 평가
 10.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사용료를 결정 및 관리
 11. 산지와 연계한 친환경 체험교육 운영·지원에 관한 사항

12. 그밖에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에 위탁한다.

◦ **학교급식법 제5조** (학교급식위원회 등)

④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 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◦ **학교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** (2014, 교육부)

2.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법적 근거

학교급식지원센터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이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광역자치단체 단위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봄.

나. 예산조치 : 2018년도 반영 예정

- 예산액 : 위탁금 산정관련 전문가 자문중(2018년도 예산심의시 심의후 확정 예정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친환경급식과 친환경급식관리팀 박진희(☎2133-4151)